

의안번호	2123971
의 퇴 인	박성준의원
회 답 일	2023. 10.5.
추 계 번호	23D3699

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¹⁾에 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이 법 시행 전에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4,000만원을 비롯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억 1,000만원(연평균 2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6조)		35		35		70	14
시장조사를 위한 준비행위(안 부칙 제2조)	40					40	8
합 계	40	35		35		110	22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- 1) 안 제2조(정의) 1. “온라인플랫폼”이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2. “온라인플랫폼시장”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거래되거나 온라인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(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.
 3. “온라인플랫폼서비스”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의 거래,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 가. 온라인 중개서비스
 나. 온라인 검색서비스
 다.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
 라. 동영상공유서비스
 마. 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인(對人)통신서비스
 바. 운영체제
 사.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
 아. 그 밖에 이용자들 간 거래, 정보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실태조사 등)	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19조(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)	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, 영업 양수,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	의무규정
3	안 제20조(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 수립)	공정거래위원회는 2년마다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21조(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지원계획 수립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22조(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)	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3조(위반행위의 조사)	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,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며,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고,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	재량규정
7	안 제25조(시정명령)	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	재량규정
8	안 제26조(시정권고)	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9	안 부칙 제2조(시장조사를 위한 준비행위)	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시장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실태조사 등)	○	
2	안 제19조(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)	×	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
3	안 제20조(공정경쟁촉진종합 계획 수립)	×	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
4	안 제21조(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지원계획 수립)	×	업종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상, 지원하는 범위, 내용, 기간 등에 대하여 추계 곤란
5	안 제22조(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)	×	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대상, 범위, 내용, 기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계 곤란
6	안 제23조(위반행위의 조사)	×	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 가능
7	안 제25조(시정명령)		
8	안 제26조(시정권고)		
9	안 부칙 제2조(시장조사를 위한 준비행위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시장조사를 위하여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실태조사 등(안 제6조)

-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시장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년마다 3,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공정거래위원회의 ‘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’사업의 내역사업인 ‘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’에서 지원된 ‘플랫폼 분야 등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용역’의 소요예산이 3,500만원(2022년)임을 고려할 때, 이와 동일하게 추정함

나. 시장조사를 위한 준비행위(안 부칙 제2조)

-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시장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첫해에만 4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이 법 시행 전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시장현황 기초자료 구축이나 방법론 연구 등을 실시한다고 가정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첫해인 2024년에 4,000만원으로 추정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’사업의 내역사업인 ‘부가통신시장 실태조사 기초자료 구축(부가통신 통계 자료 수집)’ 예산 4,000만원(2020년)을 고려하여 이와 동일하게 추계

다. 추계결과

- (일부추계)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, 이 법 시행 전에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1억 1,000만원(연평균 2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2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 (안 제6조)		35		35		70	14
시장조사를 위한 준비행위(안 부칙 제2조)	40					40	8
합 계	40	35		35		110	22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부유추계과	여은구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